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28호
2026. 6. 5.(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3)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663호) ····· 1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669호) ····· 6
- 오정상생하우스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공고 제2026-672호) ····· 8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 - 663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6. 5. ~ 6. 30. (25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7. 1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7. 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7. 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박*름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50-1, *동 4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렌트카㈜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7**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송*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282번길 28, 3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초롱길 11, *동 1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수취인불명
김*준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582*-*	간이보관기구 이용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00,000	폐문부재
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1*동 3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이*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 *동 20*호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0	폐문부재

[별첨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강**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4번길 51, 10*동 230*호	간이보관기구 이용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이*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64번길 61-5, 20*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208,400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669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같은 법 제32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6. 5. ~ 6. 19. (14일간)

5. 공고대상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현장소재지)	위반사항 (관련법규)	예정처분 (관련법규)
한*석유 (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 (대덕구 오정로 **)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 042-608-685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26.6.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부과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5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672호

오정상생하우스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오정상생하우스’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주소
   - 위탁시설

위탁시설 명칭		주소	운영공간
오정상생하우스	A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43-4	지상1층 어른이휴게쉼터
	B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43-14	지상2층 창업지원센터를 제외한 전체

   - 수탁기관: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88번길 30(오정동)

2. 위탁기간: 2026. 6. 2. ~ 2028. 6. 1. (2년)
   ※ 위·수탁 계약일: 2026. 6. 1.

3. 위탁사무와 그 내용
   - 오정상생하우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기타 사항
   -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위탁계약의 해지, 시설의 안전관리 사항 등은 위·수탁 계약서에 내용 포함

5.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